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30.(수)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05. 28.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349호)
- 나. 회부일자: 2021. 05. 2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3회 성북구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06. 0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프로그램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영유아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간제 보육 사용료를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액에 따름'으로 내용 변경 (별표 2, 제27조제2항 관련)
- 월곡센터와 보문센터간 사용료 내용 일치(별표 2, 제27조제2항 관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 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함) 내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영유아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7조¹⁾ 관련 별표2의 사용료 기준액을 변경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현행 시간제 보육료를 ‘시간당 4,000원’에서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액에 따름’으로 변경하고, 놀이체험 프로그램 사용료(2만원 이하)와 명칭을 조정·변경하는 것으로,
- 시간제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²⁾에 의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경되는 바, 지침에 따라 보육료가 변경 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간제 보육 사용료를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액에 따름’으로 변경〉

구분		현행		변경후
월곡	시간제보육	시간당	4,000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정한 금액
보문	시간제보육	시간당	4,000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정한 금액

1) 「서울특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7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이용료 등과 물품대여에 따른 대여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은 각각 별표 2와 별표 3과 같으며, 제19조4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 놀이체험 프로그램 사용료 조정 및 명칭을 변경한 것은 월곡·보문센터 간 놀이체험 프로그램은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와 명칭이 상이하여 동일하게 변경한 것이며, 현재 월곡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도예와 요리활동으로 제한되어 있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임.

〈월곡센터와 보문센터간 사용료 및 프로그램명 일치〉

- 단체놀이·개인놀이 프로그램(월곡)

구 분		현 행		변경후
월곡	단체놀이 프로그램	놀이+요리	9,000원	20,000원 이하
		놀이+도예A	6,000원	
		놀이+도예B	9,000원	
	개인놀이 프로그램	놀이+요리	9,000원	20,000원 이하
		놀이만들기+요리	12,000원	

- 놀이·문화강좌, 교육 및 세미나(보문)

	구 분	사 용 료		비 고
현행	전문가 놀이·문화강좌	월	40,000원 이하(재료비 별도)	-
	교육 및 세미나	회당	30,000원 이하(재료비 별도)	-
변경 후	놀이·문화강좌	월	40,000원 이하(재료비 별도)	-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교육 및 세미나	회당	30,000원 이하(재료비 별도)	-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월곡·보문센터 간 사용료를 일치시키고, 프로그램 다양화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